

□ 관련선례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가)압류의 경합 없이 단일의 가압류로도 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이하 '가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 한다)가 경합하는 경우에 가압류의 존재만으로 공탁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이하 '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사인(私人)인 제3채무자는 위 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법률상 차이점, 우선순위 등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을 통하여 제3채무자를 면책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후의 배당절차에 체납처분권자가 참여하는 문제도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선후를 불문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 허용되는 이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제3채무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 대한 공탁사실통지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공탁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한편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하다는 점, 가압류 집행공탁은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관으로 바뀌게 되는 변제공탁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전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상 부담은 새로운 제3채무자(공탁관)에 대한 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297조에 따라 그 가압류의 효력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02311).

□ 관련선례 :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1. 공탁서 정정이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가 있음을 공탁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탁서 정정에 관한 공탁규칙 제30조에는 정정신청의 종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히 토지수용절차에서는 공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위해서 공탁서의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를 정정할 실익이 있으므로, 공탁자는 공탁금이 지급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그런데 공탁서의 정정은 이미 성립한 공탁의 법률관계에 따른 공탁의 법적 안정성과 공탁당사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탁서 및 첨부서면 전체취지로 보아 공탁서에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을 때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만일 공탁소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기록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탁관은 정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공탁원장 등을 참작하여 정정신청의 수리 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202303-1).

□ 관련선례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음을 원인으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이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므로, 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피공탁자)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한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공탁금 전액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지위에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한편 금전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으로 인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202307-1).

[1]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자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공탁사건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안내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 수신내역을 소명한 경우, 공탁관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자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공탁사건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안내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 수신내역을 출력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소명한 경우 공탁관은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2024. 6. 4. 사법등기심의관-2933 직권선례)

[2] 채권양도가 이뤄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절차

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뤄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로 하고, 피공탁자는 '양수인(가처분채무자)'으로 하되, 위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2. 한편 위 1.과 같이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면, 그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제3채무자는 위 1.과 같은 방식으로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2024. 6. 10. 사법등기심의회관-3002 질의회답)

[3]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채권자 대위판결이 확정된 후 피대위권리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순차적으로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또는 변제수령권능에 불과하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는 공탁근거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으로 기재하여 압류결정문 사본을 모두 첨부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 압류사실을 모두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제3채무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장 먼저 송달받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하여야 할 것이다.

(2024. 6. 10. 사법등기심의회관-3003 질의회답)

**[4] 공탁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1.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공소장 등에 피해자들의 성명이 실명 또는 가명[예시: 홍길동(가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피해자에 대한 공탁원인사실(피해 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3. 이와 달리 ① 각 피해자들의 성명이 실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탁원인사실(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이 다른 경우, ② 피해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공탁서 기재에 의하여 피공탁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각 1건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2024. 6. 13. 사법등기심의회관-3074 직권선례)

[1]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 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1.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 및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내용란에 ‘건물의 인도’ 라고 기재한 것은 유효한 공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인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공탁자의 서면(공탁자 작성의 건물인도확인서, 반대급부채권 포기·면제서 등),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공탁자의 강제집행신청으로 건물의 인도 사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등) 등이 해당한다(공탁법 제10조).
3. 이외에도, 관리비 정산내역서, 피공탁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통·반장의 인도(불거주) 확인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인도(불거주) 확인서, 이사 확인서, 공실인 인도 대상 목적물(호실)과 촬영 날짜가 표시된 현장사진, 공탁자에게 퇴거사실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린 문자메시지 또는 내용증명우편, 현관문 열쇠를 물품 공탁한 물품 공탁서 등을 제출하여 반대급부인 건물의 인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첨부된 서면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는 해당 공탁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4. 7. 12. 사법등기심의관-1698 질의회답)

##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24. 6. 27. [행정예규 제1400호, 시행 2024. 8. 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2. “채권자 불확지”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동일 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혼합해소문서”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이하 “집행채권자”라 한다)가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 제3조 (관할공탁소)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제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탁자들 중 어느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제2장 공탁절차

### 제4조 (공탁사유)

- ① 제3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1. 선행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2.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거나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3.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경우
- ②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③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다수의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고, 다수의 지분권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제5조 (공탁서 기재 방식)

- ① 피공탁자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되, 집행채권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
  2. 제4조제2항의 경우 권리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3. 제4조제3항의 경우 지분권자 전부
- ②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을 기재한다.
- ③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나 압류명령 및 그 송달일자, 채권양도와 그 통지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 (첨부서면 등)

- 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의 「공탁규칙」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공탁자는 제4조의 공탁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채권양도서류, (가)압류 결정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제공탁 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별지의 공탁사실통지서와 제1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 ①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은 제8조에 따른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혼합해소문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음을 이유로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혼합공탁이 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 제8조 (혼합해소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혼합해소문서가 될 수 있다.

1.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정본

2.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② 제1항의 혼합해소문서는 피공탁자,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③ (가)압류채권자·채무자 등은 제1항의 혼합해소문서를 공탁사유신고가 이루어진 집행법원 및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공탁금 출급)

①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이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정본 포함)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진 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집행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 (공탁금의 회수)

- ① 공탁자는 공탁금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공탁자는 혼합공탁의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 (「공탁규칙」의 준용)

- ①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가 제9조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3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공탁자가 제10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에 대해서는 「공탁규칙」 제3장을 준용한다.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3. 6. 1. [행정예규 제1345호, 시행 2023. 7. 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관할공탁소)

- ①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된 경우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② 여러 사람 중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이하 "수용대상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제3조 (관할공탁소 외 공탁신청 제한)

사업시행자는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관할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서 공탁신청을 할 수 없다.

## 제2장 공탁신청절차

### 제4조 (공탁사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5.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있을 때
6.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 제5조 (상대적 불확지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1.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피공탁자: 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다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는 제외
2.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한 등기기록이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피공탁자: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
3.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공유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공시된 공유자 전부)
4.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상속인들 전부)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다.

1.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2.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공매공고(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포함) 등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 제6조 (절대적 불확지공탁)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1. 수용대상토지등이 미등기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피공탁자: 소유자 불명)

가.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나.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

다. 대장상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2. 수용대상토지등이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소유자 불명)

3.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가. 상속인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상금 전부(피공탁자: 망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병기]의 상속인)

나. 상속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알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한 보상금 부분(피공탁자: 망 ○○○의 상속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병기] 외 상속인)

### 제7조 (공탁서 기재 시 유의사항)

- ① 사업시행자가 불확지공탁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수용대상토지등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거나 수용대상토지등에 있는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 (보상금 전액 공탁)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서에 기재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 제9조 (회수제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라서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다만,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 (확지공탁의 출급)

① 피공탁자로부터 상속·채권양도·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출급청구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②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등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사람은 공탁서 정정 없이도 소유권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탁물을 출급할 수 없다.

1. 수용개시일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

2.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개시일 전에 그 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람(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경우도 동일함)

3. 구 토지보상법 제18조(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4.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 제11조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

- 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다만,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도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②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인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 제12조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자신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하도록 하거나 공탁물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 제13조 (출급제한)

①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사람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3호) 피공탁자는 그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물을 출급할 수 없다.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보상금을 증액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 피공탁자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공탁물을 출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탁물을 출급할 때 피공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발급한 재결확정증명서 또는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 불복절차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을 때의 공탁절차

### 제14조 (집행공탁)

- ①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있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는 때(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만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와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에 따라 각각 공탁할 수 있다.
- ②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이 집행되어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5조 (집행공탁절차)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의 공탁절차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16조 (상대적 불확지공탁)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이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함).

**형시공탁예규 개정사항**  
**-이곳 1차 자료실 참조 -**

【문11】 수용보상금 공탁금 출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4 법원사무관)

-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 등기 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② 공탁서에 피공탁자가 '甲과 乙'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甲은 자신이 단독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이 甲에서 乙로 변경되었음에도 수용보상금이 승계전 소유자인 甲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 乙은 피공탁자의 정정없이도 소유권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개시일 이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② 공탁문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甲과 乙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가 甲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2

(정답) ②

【문12】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4 법원사무관)

-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제3채무자는 위 가압류 집행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위 가압류 집행공탁 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 가압류 집행공탁이 수리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지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④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202311).

(정답) ④

【문13】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4 법원사무관)

-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한 이후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인 근로자는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피공탁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얻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고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공탁물의 출급을 받을 수 없다.
- ③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므로, 실제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④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국가에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국가에 송달되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차후에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승계인으로서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② 부당한반대급부조건을붙인변제공탁은채권자가이를수락하지않는한 무효의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위 조건을수락하여공탁물의출급을받으려고한다면 먼저반대급부조건을이행하고반대급부조건을이행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정답) ②

**【문14】 재판상 담보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24 법원사무관)**

- ① 공탁자는 공탁서에 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제3자도 재판상 담보공탁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공탁금회수 청구권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갖는다.
- ③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응소를 위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④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해설) ① 변제공탁이 아닌 담보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을 제3자가 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제3자가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③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응소를 위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문15】 공탁금 출금청구 시 첨부서면으로서 공탁통지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24 법원사무관)

- ①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지급절차에서 공탁금을 출금하려는 사람은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출금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③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금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공탁금을 출금하려는 사람이 공탁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통지서 첨부이 면제되지 않는다.

(해설) ①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우편료도 납입하지 않는다. ② 출금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공탁금을 출금하려는 사람이 공탁서를 첨부한 경우도 공탁통지서 첨부이 면제된다.

(정답) ③

【문16】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무(1천만 원, 양도금지특약 있음)를 부담하고 있는데, 채권 전액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양수인 丙)와 丁의 채권압류 및 주심명령(집행채권액 1천만 원)을 순차적으로 송달받고 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 불확지 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4 법원사무관)

- ㄱ. 甲은 '乙 또는 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ㄴ. 배당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甲은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ㄷ. 위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ㄹ. 丙은 乙과 丁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공탁소에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해설) ㄴ. 혼합공탁은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ㄷ.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일면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한 후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공탁서를 붙여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일반적인 집행공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채권 등 집행사건의 배당절차사건으로 수리하게 된다. 그러나 혼합공탁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그 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압류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문17】 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4 법원사무관)**

- ① '甲 및 乙'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甲' 1인으로 정정하거나 '甲'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甲 또는 乙'로 정정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 ②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 ③ 토지수용절차에서는 공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위해서 공탁서의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를 정정할 실익이 있기는 하지만, 공탁금 지급으로 공탁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공탁자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해설) ③ 관련선례 :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1. 공탁서 정정이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가 있음을 공탁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탁서 정정에 관한 공탁규칙 제30조에는 정정신청의 종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히 토지수용절차에서는 공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위해서 공탁서의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를 정정할 실익이 있으므로, 공탁자는 공탁금이 지급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그런데 공탁서의 정정은 이미 성립한 공탁의 법률관계에 따른 공탁의 법적 안정성과 공탁당사자의 실제적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탁서 및 첨부서면 전체취지로 보아 공탁서에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을 때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만일 공탁소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기록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탁관은 정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공탁원장 등을 참작하여 정정신청의 수리 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202303-1).

**(정답) ③**

**【문18】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4 법원사무관)**

- ①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하고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담보취소결정정보 및 확정증명서가 제출된 때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후 공탁의 원인이 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이 된 후 공탁의 원인이 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압류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때에는 사유신고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③

【문19】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지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4 법원사무관)

- ①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방문하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에 인계된 사건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및 송부는 검찰이 담당한다.
- ③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공판검사에게 피해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공탁금 출급을 원치 않는 피공탁자는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해설) ① 형사공탁절차에서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확인은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 의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이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것으로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공탁자가 공탁금에 관한 권리(출급, 회수동의)를 신속히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공탁예규가 개정되었음.

(정답) ①

【문20】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100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50만 원)을 송달받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100만 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4 법원사무관)

- ① 乙은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탁금 중 50만 원을 출급할 수 있다.
- ② 丙은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탁금 중 50만 원을 출급할 수 있다.
- ③ 甲은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공탁금 중 5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
- ④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00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丙의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② 丙은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야 출급할 수 있다.

(정답) ②